

##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ve in Italy

박 광 동\*  
Park, Kwang-Dong

### 목 차

- I. 서론
- II. 현황
- III. 법체계
- IV. 구체적 내용
- V. 결론

### 국문초록

이탈리아 법률구조에는 협동조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법률에 의하여 계획된 다른 것들과 달리, 조합에 관한 자치 법률 유형/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이탈리아 법률은 기업법률 양식이 적절하다고 옹호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기업의 협동조합법은 이탈리아에서 헌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화국은 특정한 사적인 목적이 없이 상호적 성격을 가진 협동적 사회기능을 인식한다.

논문접수일 : 2013.12.30

심사완료일 : 2013.02.04

게재확정일 : 2013.02.05

\* 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강남대학교 겸임교수

법률은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성격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는 총칙이라는 구조적인 단위와 각칙이라는 필수적인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① 모든 기업에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총칙은 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다른 총칙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 중 가장 많이 관련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③ 각칙은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유형이나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의 관계 및 추구하는 목표에 근거하여 특정한 유형의 협동조합과 관련된다.

④ 협동조합에 관한 총칙과 각칙의 관계는 각칙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양립 가능한 경우에만 총칙이 적용된다. 또한 협동조합이 양립가능하면 두 가지의 회사 유형을 관리하는 규정을 부가적으로 적용한다.

주제어 : 이탈리아, 협동조합, 협동조합법,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원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월 26일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새로운 법인인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다(같은 법 제15조 및 제85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조합원 권익증진, 1인 1투표권,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유형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규율을 따로이 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관계부처 합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 방향, 위기관리대책회의 12-35-2(의결안건), 2012. 11. 28, 3면.

보면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격은 (영리)법인이고, 설립 시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분야로 금융·보험업 금지 외에 제한분야가 없다. 또한 법정적립금으로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요구하고, 배당은 가능하며, 청산은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비영리법인이고, 설립 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분야로 공익사업 40% 이상의 수행이 필요하다.<sup>2)</sup> 또한 법정적립금으로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요구하고, 배당은 금지되며, 청산은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국고 등에 귀속시킨다.<sup>3)</sup>

이러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협동조합이 발달한 다른 국가의 법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에 협동조합의 수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역사나 전국적인 체계에 있어서도 국가 단위로는 최고 수준에 있으므로,<sup>4)</sup>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법률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시사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한다.

## II. 현황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월 15일 현재 까지, 일반협동조합 160건과 사회적 협동조합 21건, 총

- 2) 이 때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되지만 다만,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는 가능하다.
- 3) 김두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2. 8. 38-39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기획재정부, 2012. 2. 8. 3면.
- 4) 정건영,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의 이해”, 「대학생협」 통권 31·32·33호, 1995. 7. 75면([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9D%B4%ED%83%88%EB%A6%AC%EC%95%84%20%ED%98%91%EB%8F%99%EC%A1%B0%ED%95%A9%EC%9A%B4%EB%8F%99%EC%9D%98%20%EC%9D%B4%ED%95%B4&source=web&cd=2&sqi=2&ved=0CDsQFjAB&url=http%3A%2F%2Fwww.wjhansalim.or.kr%2Ftboard%2Fdownload.php%3Fforum%3Dshare\\_\\_bbs%26num%3D1719%26n%3D0&ei=8THgUPqoCoOfkwXN\\_\\_4CIAQ&usg=AFQjCNGLO4GKKEjWWBJhv--CfyiS5gN5Q&cad=rjt](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9D%B4%ED%83%88%EB%A6%AC%EC%95%84%20%ED%98%91%EB%8F%99%EC%A1%B0%ED%95%A9%EC%9A%B4%EB%8F%99%EC%9D%98%20%EC%9D%B4%ED%95%B4&source=web&cd=2&sqi=2&ved=0CDsQFjAB&url=http%3A%2F%2Fwww.wjhansalim.or.kr%2Ftboard%2Fdownload.php%3Fforum%3Dshare__bbs%26num%3D1719%26n%3D0&ei=8THgUPqoCoOfkwXN__4CIAQ&usg=AFQjCNGLO4GKKEjWWBJhv--CfyiS5gN5Q&cad=rjt)).

181건이 접수되어 이 중 총 95건이 처리 되었다. 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93건 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2건이었다.<sup>5)</sup>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총 GDP의 약 10%, 영리기업들을 포함한 민간경제 주체 수에서도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수는 2011년 기준 총 95,000개로, 이 중 주택조합이 약 11,0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18,000개, 신협이 422개 정도이고, 그 밖에 농업, 섬유, 식품, 목재, 경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농업, 운송, 어업, 사회적 일자리 분야의 50% 이상의 일자리를 협동조합이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에 대한 역할 기대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7)</sup> 즉, 협동조합은 9인 이하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또는 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 및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적 참여 및 일자리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협의체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에서도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관한 이탈리아의 관리에 대해서 보면, 중앙정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와 유사한 역할의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e Sviluppo Economico)의 2개부서가 담당하고 있다.<sup>8)</sup> 또한 중앙정부는 제도의 정비, 등록, 감독 등의 지침,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실행부문은 지방정부에게로 대폭 이양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록, 감독, 지원, 조사 등의 실

5)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 관계부처합동, 2013. 1. 24, 3면.  
6) 이하의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현황은 연구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2012. 4, 44-51면 참조.  
7)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은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제도 구축이 된 것이다[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전거서, 2면].  
8) <http://www.sviluppoeconomico.gov.it>.

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등록업무는 협동조합 등록 시에는 주정부 산하 상공회의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개별 협동조합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둘째, 토지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 시에 주정부가 장기간의 토지를 대여하고 있다. 셋째, 실태조사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각 지역의 협동조합 연합회와 연계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은 주 지역 내 기업들과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이 협동조합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이탈리아 헌법 제45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을 인정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조직간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의 자유를 승인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정부와 연계하여 협동조합 등록업무의 대행과 실태조사, 개별 협동조합의 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 및 관리의 대행에 대해서 보면, 개별 협동조합들의 등록 지원을 위해 연합회가 주 지방정부의 상공회의소로부터 등록·관리를 위임받아 대행을 하고 있다. 둘째,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의 통계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합회가 위탁받아 지역연합회로 하여금 통계 및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경영컨설팅에 대해서는 영리기업 대비 경영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역 연합회가 회계, 고용 등 경영컨설팅 및 영업망 개척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별 협동조합은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및 고용 제공을 위해서, 영리기업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은행보다 조합원들로부터 낮은 이자에 의한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사업의 진출 시에 조합원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도매업체와 소매업체간, 지역 간 제품가격정책을 책정·조정하여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생성 및 확산을 통해 1차적으로 조합원, 2차적으로 근로자, 3차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협동조합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발생 시에, 투자지분액 규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 Ⅲ. 법체계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 사업체는 상호조합(mutual association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입법체계는 헌법(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민법(Codice Civile), 개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까지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른 특별법<sup>9)</sup>만 제정하였다.

우선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법체계를 보면, 헌법 제45조에서는 “공화국은 상호부조의 특성을 갖고 사적 투기를 지향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승인한다. 헌법은 적합한 수단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협동조합의 특성과 목적을 확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은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5편 제6부에 ‘협동조합기업 및 상호보험조합’에 관하여 제2011조부터 제2048조까지 총 38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7절로 구성되어 있고, 제1절 총칙에서는 협동조합(제2511조), 공제조합(제2512조), 무한책임협동조합(제2513조), 유한책임협동조합(제2514조), 협동조합의 명칭(제2515조), 적용법규(제2516조), 특별법(제2517조)을 규정하고 있고, 제2절 협동조합의 설립에서는 정관(제2518조), 정관 등록과 등기(제2519조), 조합원과 자본의 가변성(제2520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지분과 주식에서는 지분과 주식(제2521조), 지분 또는 주식의 매입(제2522조), 지분과 주식 양도(제2523조), 지분 또는 주식의 미지급(제2524조), 신규조합원의 가입(제2525조), 조합원의 탈퇴(제2526조), 조합원의 제명(제2527조), 조합원의 사망(제2528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처분 또는 주식에 대한 보상(제2529조), 탈퇴한 조합원이나 조합원 상속인들의 책임(제2530조), 조합원의 특정한 채권자(제2531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4절 기관에서는 총회(제2532조), 분산주주총회(제2533조),

9)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연업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총회대표권(제2534조), 이사와 노동조합(제2535조), 이익의 배분(제2536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5절 정관의 수정에서는 정관수정(제2537조), 합병 및 분할(제2538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절 해산과 청산에서는 해산(제2539조), 파산(제2540조), 조합원들의 부차적 책임(제2541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절 정부의 감독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제2542조), 관리위원(제2543조), 감독기관에 의한 해산(제2544조), 청산인 대체(제2545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위의 협동조합과 관련한 민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총칙에서는 조합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협동조합을 무한책임협동조합과 유한책임협동조합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제2511조).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에는 무한책임협동조합과 유한책임협동조합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한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제2515조).

둘째, 협동조합의 설립에서는 정관의 표시사항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관의 등록은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2519조).

셋째, 지분과 주식에서는 지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8천만 리라(Lirac(e))의 상한선과 각 지분의 명목가치에 대한 하한선으로 5만 리라를 규정하고 있다(제2519조). 또한 지분과 주식 양도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채권양도 형태의 경우에는 이사들의 승인이 필요하고, 정관으로서 회사의 채권양도 형태를 금지할 수 있다(제2523조). 그리고 조합원의 탈퇴는 회계연도의 마감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제2526조).

넷째, 기관에서는 조합장부에 최소 3개월 이전에 등록된 각 조합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제2532조). 그리고 대리인은 조합원 중에 선출할 수 있지만, 총회에서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제2533조-제2534조).

법정 적립금은 총액과 무관하게 상호부조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매년 연간 순 이익의 최소 1/5이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제2536조).

10) [http://www.jus.unitn.it/cardoza/Obiter\\_Dictum/codciv/](http://www.jus.unitn.it/cardoza/Obiter_Dictum/codciv/).

다섯째, 해산과 청산에서는 회사의 활동이 채무상환에 충분하지 않으면, 회사가 청산중이라도 관할청은 회사에 대해 강제적 행정청산을 이행할 수 있다. 이 때 특별법에 속하는 협동조합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제2540조).

여섯째, 정부의 감독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관할청은 회사의 법정관리인에게 경영권을 위임할 수 있고, 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부법정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제2543조). 그리고 관할청은 협동조합의 청산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부당한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대체할 수 있다(제2543조).

그리고 개별법에서 각각의 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별법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항은 Baevi 법의 Code Civile 6 편 제5권 2511-2545에 규정되어 있고, 이 법은 1992년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출자한도의 인상, 출자금의 재평가, 이자를 지급하는 출자지분의 도입, 투자조합원제의 도입 등인데,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은 자본조달에 있어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sup>11)</sup>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개별법은 1991년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법(Italian Law 381/91 on Social Cooperation) 등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법은 영리 목적의 주체에 대한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주적 구조를 제공하고, 대차대조표 이외에도 조직 활동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회적 결산서(social balance)'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이루어진 체계(multi-stakeholder framework)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재정적 혜택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원화된 규율로 인해 다종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A형, B형으로 구분이 된다(사회적 협동조합법 제1조). 원칙적으로는 2종으로 나누어서 등록되지만, 일부 혼합형도 인정되고 있다. 회원의 7할 이상이 사회적 협동조합인 사업 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인정

11)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 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70면.



되고 있다(제8조).<sup>12)</sup>

A형 협동조합에 대해서 보면 그 목적은 개인·가족 상태 혹은 사회적 상태와 관계되어 사회적 원조가 필요한 사람에의 지원이고, 사업내용은 사회·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그리고 사업통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의 노동자를 30% 이상 구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을 제공해 보수를 받는 종사 조합원, 자원봉사 조합원, 이용 조합원 혹은 서비스의 이용자 등이 되고, 재정우대 정책은 없다.

B형 협동조합에 대해서 보면 그 목적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통합이고, 사업내용은 다양한 사업,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서비스 등이다. 그리고 사업통합과 관련하여 노동자(조합원, 비조합원 포함)가 적어도 30%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은 종사 조합원(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의 사람들 및 정상인), 자원봉사 조합원 등이 되고, 재정우대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의 사람들의 보수에 관한 사회 보장 등의 조합(사업주)부담은 0으로 하고 있다(제4조).

#### IV. 구체적 내용

이탈리아 법률 구조에는 협동조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법률에 의하여 계획된 다른 것들과 달리, 조합에 관한 자치 법률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13)</sup>

우선, 기업의 협동조합법은 이탈리아에서 헌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즉, 헌법 제45조는 협동조합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의 승인 및 협동조합의 특성과 목적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12) 岡安喜三郎, “イタリアの社會的協同組合の歴史と概要”, 第43次歐洲勞働者福祉視察 事前研修會, 2011.7.20, 3面.

13) Cooperatives Europe/ EKA Center/ Euric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1435/2003 on the Statute for European Cooperative Society-Part II: National Reports*-, Euricse: Euricse, 2010, p. 680.

협동조합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는 총칙이라는 구조적인 단위와 각칙이라는 필수적인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모든 기업에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총칙은 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칙은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유형(1993년 9월 1일 법령 n. 385로 규율되는 협동조합 은행(cooperative banks))이나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2001년 4월 3일 법령 n. 142로 규율되는 노동자 협동조합) 간의 관계 및 추구하는 목표(1991년 11월 8일 법령 n. 381로 규율되는 협동조합)에 근거하여 특정한 유형의 협동조합과 관련된다.

## 1. 출처와 법률적 특징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과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탈리아에는 구체적이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협동조합 법률이 있다.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이 가능한 총칙이 있으며, 총칙의 대부분은 민법(기업과 사회집단에 관한 민법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협동조합 유형에 관한 각칙도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은행, 노동자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각칙은 특별히 규율되는 협동조합의 특유한 면만을 다루고 있다. 즉, 보통 총칙의 영역의 범위 내에서는 국가 협동조합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측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도 총칙이나 각칙과 같은 구체적인 협동조합에 관한 규칙이 없어도 양립이 가능하면 협동조합에 적용될 수 있다.

## 2. 협동조합의 목적과 정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상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

14) [www.euricse.eu/working-papers](http://www.euricse.eu/working-papers).

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제1호)을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 공헌이 협동조합의 주요 목적이고, 상호적 목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탈리아 민법 제2511조는 협동조합이라는 집단에 대하여 “상호적 목적”을 부여한다. 대체로 유럽협동조합법(SCE Reg: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Regulation)과는 다른 법률에 의해 협동조합에 할당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탈리아 법률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있어서 “상호적 목적”은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거나 일자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합원을 위하여 활동해야 할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용(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과의 교환(소비자 협동조합과 생산협동조합)이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이익의 보호와 기업의 경제적 균형의 측면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국, 이탈리아 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목적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재화와 용역의 교환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이탈리아 법에 의하여 “상호적 목적”으로 정의되며, 유럽협동조합(SCE)을 규율하는 유럽협동조합법(SCE Reg)의 목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sup>15)</sup>

상호적 목적에 의하여 특징지워지는 민법에 정의된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정의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호적인 목적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순수한 사회적(비상호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사회적 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a)사회건강과 교육 서비스의 관리, b)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통합을 위한 농업, 산업, 상업, 용역 및 다른 활동의 수행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사회 통합과 인간 개발을 위하여

15) Antonio Fici, *Cooperative sociali e riforma del diritto societario [Social cooperatives and the reform of company law]*: in *Rivista di diritto privato*, 2004, p. 75.

16) Antonio Fici,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comparative and legal profile*, in B. Roelants (ed.),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Governance and normative frameworks*: CECOP, Brussels, 2009, p. 77.

사회 일반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3. 활동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특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법률적 형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약은 없다. 물론 법률이 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한을 담고 있다면, 이들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법률적 형식에 적용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령이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한하지 않고 비조합원과도 협력할 수 있다.<sup>18)</sup> 그래서 조합원들과 함께하기 위한 “순수한” 상호성이 법적 요구사항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MMC(mainly mutual cooperative, 주요 상호의 협동조합)와 OC(other cooperative, 다른 협동조합)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전자는 조합원과 함께 경영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조합원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활동은 ①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소비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을 때, ②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노동을 통한 노임(勞賃)이 전체 노임의 50%를 넘을 때, ③생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 의하여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제조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의 50%를 넘을 때에 이행된다.

반대로, OC는 비조합원의 활동 제한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비조합원만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비상호적이라는 것은 세금혜택을 위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법률은 우월한 상호적 특성을 가진 협동조합과 상호적 성격이 없는 협동조합을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sup>19)</sup>

17) 김태열/김현경/우미숙/전홍규, 「협동조합 도시 불로냐를 가다」, 그물코, 2010, 18면.

18)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7조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83.

#### 4. 설립의 형식과 유형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설립은 각 개별법 및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의 경우 협동조합은 공증인에게 선택된 법령, 즉, 공법을 통하여 설립될 수 있다(민법 제2521조). 법인에 관한 법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관한 실질적 법률<sup>20)</sup>과 단체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 등으로 나뉘어진다.

공법은 등기된 기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민법 제2523조). 이러한 경우에만 협동조합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이로써 완전한 “세습적 자치권(patrimonial autonomy)”을 가진 것으로 규정 지워지게 된다. 즉, 조합원들은 부여된 내용 이상의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협동조합 집단”이라는 어구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안에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2515조).

#### 5 조합원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의 최소 조합원 수를 5인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협동조합기본법 제152조, 제85조), 이탈리아에서는 3인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2522조)<sup>21)</sup>.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협동조합과 함께 노동이나 교환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자질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조합원으로써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필요조건들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의 경제적 활동이나 상호적 목적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법령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민법 제2521조, 같은 법 제2527조). 또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에 정확히 그

20) 단체의 목적, 목표, 조합원의 이름, 등록 사무소의 위치, 단체의 이름과 같이 단체의 정체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21) 예컨대, 저축대출조합의 최소한의 수는 200인이다.

허용에 관하여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투자 조합원들의 이익은 협동 조합과의 노동·교환과 같은 “상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납입자본에 따른 보수에만 있을 뿐이다. 투자 조합원들은 사용자 조합원들과 같은 법인격을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관리상 혹은 재정상의 특권을 부여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법 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자,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의 개발에 관심이 있는 공적 및 사적 단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용금고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그 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등록된 사무소가 있고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령이 있다(art. 34, legislative decree(입법명령) 385/1993).

그리고 협동조합 자본의 가변성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조합원에 대한 허가는 법인에 관한 법규 및 법령의 개정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의 허가는 민법 제2527조 및 제25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법령은 협동조합에 의하여 이행되는 활동 및 목표와 관련된 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와 새로운 조합원의 허가에 관한 요구조건을 정하고 있다. ②조합원가입을 거절당한 후보자들은 관련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민법 제2528조). 이 때 공무원들은 연간 대차대조표에 첨부된 보고서에 새로운 조합원의 허가에 관하여 만들어진 결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 6. 재정 상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하여 법정 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규정을 두어(제50조, 제97조), 가변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가변자본(variable capital)을 가진 집단이다. 자본의 가변성은 이탈리아 민법(제2511조)에서 협동조합을 정의하는

22) Guido Bonfante, *Società cooperative [Cooperative societies]*, in *Enciclopedia del diritto, Annali, II, 2*: Giuffrè, Milano, 2008, p. 1087.

한 가지 요소이다. 협동조합 자본의 고정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자본의 가변성은 협동조합이 등기된 기업들의 공개나 법인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없이 새로운 조합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2524조).

자본의 변동에 관한 규정은 개방된 상태를 선호하는 협동조합의 열린 성격과 일치하고, 제3의 집단에 관하여 허가하는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자본의 가변성은 협동조합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가변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본이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기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관리에 관한 민주적 이론으로 주어진 투표권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협동조합의 자본을 다른 회사들의 자본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과 조합원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3)</sup>

협동조합의 자본은 500유로까지 25유로의 액면가격을 가진 지분으로 나뉘어진다.

지분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양도될 수 없다(민법 제2530조). 다만, 민법은 비양도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은 허가일 이후 2년간 철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민법 제2530조).

각각의 조합원들은 자본에 있어서 100,000유로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적 실체(단체)와 재정적 관계자들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법은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이윤할당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법률에서는 우선 필요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자본과 일정한 관련성을 고려하는 재정 구조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MMC나 OC인 협동조합은 법정 준비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전체이익의 최소 30%를 법정 필수준비금으로 책정하여야 한다(art. 2545-quater, par. 1). 법정 준비금에 대한 필수적 분담금은 자본의 가변성 때문에 자본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협동조합간

23)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p. 685-686.

의 견고한 성질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연대적 측면과 비배분적인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MMC나 OC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상호기금을 위하여 연간 총 이익의 3%를 할당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법 제11조<sup>24)</sup>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예를 들면 설립자로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협동조합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의 대표기관에 의한 것이다. 또한, MMC의 해산의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이러한 기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협동조합간의 결속성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sup>25)</sup>

이익의 잔여부분의 할당에 관하여도 MMC와 OC간에 차이점이 있다. 즉, 전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소 제한이 있는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후자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배될 수 있는 이윤의 법정 최대 비율이 되어야 한다. 각칙은 협동조합은행에 적용한다.

이탈리아 법에서 협동조합은 전체적이 아닌 부분적으로만 비영리기관이다. 이것은 OC와는 관계가 없다. 이는 MMC와 같이 동일한 비배당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준비금 30%와 상호기금 3%에 관한 것에 적용된다.<sup>26)</sup>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서술한 것은 “배당”과 “환급”을 구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탈리아 법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이는 다양한 조항에서 배당과 환급을 각각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배당은 자본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환급은 거래의 질과 양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지만, 각각의 조합원들은 협동관계에 있다. 실제로, 협동조합의 환급은 이익배당으로서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의 일부분을 회원들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협동조합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업무이행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하

24) 사회적 협동조합법 제11조는 “민간 법인과 공공 법인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정관에는 해당 법인의 조합 활동의 발전과 자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이를 체계상관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26)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87.



여 보상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환급”이라는 개념은 “불입자본에 관한 배당”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분명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급 같은 이익의 배당에는 제한은 없으나, 환급이 가능한 이익은 의무할당의 공제로부터 나오는 것만 고려될 수 있다.

2003년 이탈리아 회사법 개정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재정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법 제2526조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발행이 법령상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을 이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는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민법은 금융상품 보유자의 재정권 및 집행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526조).

MMC에서도 재정권에 관하여, 금융상품 보유자들은 지급받는데 제약이 없다. 즉, MMC에만 있는 제한은 조합원들에 의한 금융상품인 것으로 간주된다. 집행권에 관하여 법률은 금융상품 보유자의 범위는 조합원 전체 총 투표의 1/3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538조).

이 외에도 발행된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특징은 법령에 따른다. 즉, 협동조합은 주식금융상품(투자자 조합원을 인정한다), 주식 금융상품 및 하이브리드채권(예를 들어, 우선주 참여 채권, 즉, 투표권이 아니며, 기업의 실적과도 관계 없이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지분 및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sup>27)</sup>

## 7. 조직 형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제23조제1항). 다만,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갈

27)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88.

은 법 제75조).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각각의 조합원들은 납입자본의 양과 관계없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민법 제2538조).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투표권은 납입자본의 양이 아닌(집행의 자본주의 이론), 조합원 자격 그 자체(집행의 민주적 이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에는 “1인 1투표권”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규정의 위반에 따른 선택사항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관한 법은 법적 단체인 조합원들(협동조합이나 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형태)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조합원의 수 및 보유한 자본과 관련하여 최대 5인으로 더 주고 있다(민법 제2538조).<sup>28)</sup>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부차적 협동조합에 민주적 이론을 적용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실 하나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혹은 다른 기관)을 구성하고 그들 중 하나가 다른 협동조합 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 더 민주적으로 보이고 “1인 1투표권” 이론에 더 근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협동조합은 그 법이 5인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면서 나머지의 투표권마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조합원에게 있어서 자본 총액이 협동조합의 규모에 관한 징표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면, 더 많은 투표권을 받기 위한 법정 기준이 개인 투표권이 아닌 보유자본일 때 이 같은 규정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sup>29)</sup>

두 번째로,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과 협동조합 간 거래에 준하여 투표권을 결정하고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와 관계없이 사업가들이 있는 협동조합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민법 제2538조). 다만, 이 규정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는 조합원들은 총 투표권의 10% 이상 가질 수 없고, 모든 우대회원들은 총 투표권의 1/3이상 가

28) 이탈리아 법에서 이러한 예외는 협동조합 및 다른 기관과 개인을 구성하는 주요 협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

29)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88-689.

질 수 없다.

이러한 예외에 따르면, 민주적 이론은 최소한 사업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관하여 개정된 이탈리아 법에 의하여 재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것은 조합원의 범주나 한명의 조합원에 의한 협동조합의 관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지만, 각 조합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투표권은 그 자체가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각 조합원의 이익의 정도와 직접적인 상호관계, 즉, 투표권 배정에 관한 “상호 부조적” 기준에 있다.

세번째로, 협동조합법은 보유자본이나 상호교환에 비례하여 관리조직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을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2543조).

이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기업가로 구성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된다.
- ②관리조직의 임명에만 적용된다.
- ③결정의 기준은 보유자본의 규모와 그에 따르는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외는 비동질적인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합리적인 것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반면, 자본주의적인 결정 기준에 관하여, 이러한 예외만 관리조직의 선출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민주적 이론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더라도, 협동조합구조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을 감소시킨다.<sup>30)</sup>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들은 개별 투자조합원과 투자조합원 전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한 이내에서 투자조합원들에게 복식투표권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법은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투표권은 다른 조합원들에게만 위임될 수 있고,

30)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90.

각각의 조합원들은 10인의 조합원들 이상을 대표할 수 없다(민법 제2539조).

조합원의 참가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우편, 이메일 외에도 다른 통신 수단에 의한 투표권을 제공하도록 법령에 포함시키는 것이다(민법 제 2538조).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단체는 총회에서 대표투표권만 가지고 대표를 선출한다(민법 제2540조).

2003년 개정 이전의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관리와 집행 구조를 규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협동조합 구조는 협동조합법으로 하여금 3가지의 관리와 집행 구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소위 “단일”(monistic, one-tier), “2중”(dualistic, two-tier), “3중”(tripartite, three-tier) 구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선택사항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이탈리아 법률 형태를 관리하는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즉, 협동조합형태에 대하여 적용되는 ‘societe per ezioni’(공공유한책임회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유럽협동조합법의 영향은 이탈리아 법이 유럽협동조합법(SCE Reg)의 규정들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sup>31)</sup>

채무불이행 구조는 전통적인 3중 구조이며, 다른 방법은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조합원 단체, 이사회, 감리위원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가운데 조합원 단체는 이사와 감독관을 임명 또는 해임하고 연간 대차 대조표를 승인한다.

이사들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대표의 위치에 있고 사회적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민법 제2380조). 그들 중 일부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이사들은 비조합원일 수 있다(민법 제2542조).

감독관들은 일반적인 선의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관리하는 법령 등을 준수함으로써 이사들에 의하여 이행된 의무사항들을 확인한다. 다만, 등기감사들, 변호사나 공증인 같이 등기된 전문가들과 법학 및 경제학 교수들은 감독관으로써 임명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감독관 중 최소 1인이 등기감사이어야 한다.

감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특정한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기감

31)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90.

사 전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연차계정을 감사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등기 외부 감사인을 최소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단일구조는 이하에서 지적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3중”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감독관은 그 단체가 아닌 이사회 가운데서 임명한다. 이 때 감독관 중 최소 1인은 등기감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감독관은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이사회 의 비영업의 회원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라는 내부조직을 구성한다.

둘째, 회계 외부감사인은 항상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감독관이 감독하는 본인에 의하여 임명된다는 점에서 일부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받아 왔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비설득적이며, 조합원들은 감독관을 처음 임명된 이사로서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효과적인 집행 구조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집단에서는 집행관과 행정관간의 정부 순환을 선호하는 반면, 3중 구조를 적용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에는 없을 수도 있는 내·외부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중 구조는 조합원단체, 감독관 조직, 관리 조직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 구조에서는 조합원 단체가 위의 단체들보다 작은 기능을 가진다. 즉, 그것이 단일 구조처럼 관리자를 간접적으로라도 임명하지 않으며, 다른 중요 사안에 대하여도 대표하지 않고 연차 결산보고서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상호적 관계에 관한 일반규정의 승인 등도 마찬가지이다.

감독관 단체는 이러한 집행구조의 중심조직이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임명되며, 관리자의 선출을 책임지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그리고 단체의 책임 하에 있지 않은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고 연차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며, 기업의 산업 및 재정 계획, 전략 등을 결정할 최고집행권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감독관 조직은 최소 3인으로 구성되며 그들 중 1인은 등기감사여야 한다. 이때 관리조직은 최소 3인으로 구성되며, 비조합원도 될 수 있다. 이는 3중 구조 하에서 이사회 의 조직으로서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기업을 관리한다. 그리

32) Antonio Fici, "Financial participation by Employees in Co-operatives in Italy", i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vol. 37, n. 2, 2004, p. 16.

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산을 위한 외부감사는 항상 필요하다.

2중 구조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강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구조이며, 기업을 통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합원들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관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관리는 감독조직의 회원들과 관리자들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8. 등록과 관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각 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하게 된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기업등기부와 협동조합등기부 등의 각각의 다른 등기부에 등기된다. 기업등기부의 등기는 법인격의 취득과 법적 단체로써 협동조합의 실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에 개정된 민법 제2511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은 세금 등의 혜택에 대한 적격 조건과 같은 원래 기능을 넘어서, 협동조합 집단의 필수적 요소인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기업의 등기는 이탈리아 각 지방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수행된다. 그 협동조합은 등록 사무소를 마련하려는 지역기업의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등기는 등록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볼차노(Bolzano)와 트렌토(Trento) 자치구에 의하고, 경제개발부에 의하여 시행된다. 여기에는 MMC, OC 등의 2가지 영역이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개선”이라는 공적 개입을 허용한다. 이러한 관리는 입법명령 200/2002에 의하여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협동조합의 검토”라는 관리의 일반적인 유형은 조합원 자격의 효율성을 염두해 둔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협동조합과 상호거래와 단체생활에 대한 참여, 영리 목적의 부재, 세제 등에 대한 혜택을 위한 자격 등을 고려한다(art. 4, legislative decree 220/2002).

보통 관리는 2년 동안 이루어지지만 별도의 조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사

33)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92.

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1년 동안 이루어진다. 관리된 협동조합은 그것을 입증하는 증서를 받는다. 반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협동조합은 가능하다면 그 상황을 합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는 이러한 조직들과 연계된 협동조합인 경우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대표 기관과 관계없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경제개발부 등과 같은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양한 조치들은 조직화되지 않거나 이것이 입증된 위반 유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권에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감독권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로 대체하는 것에서부터 협동조합의 해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9. 변화와 전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상에서는 기업이나 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이 기업이나 회사로써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상충되는 것이 없는 한 협동조합의 기업이나 회사로의 전환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OC는 법적 형태인 기업이나 회사로 전환될 수 없으나(민법 제2545조), MMC는 민법 제2514조를 적용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MMC 자체의 특징을 없애면 기업이나 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같은 법 제2545조).

전환의 경우에 협동조합은 자산을 상호 기금으로 양도하고 불입자본을 삭감하며, 협동조합이 전환되는데 필요한 회사의 최소 자본을 만들기 위한 추가 금액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같은 법 제2545조). 그래서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10. 특정세금의 조정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상

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99조).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의 세금조정을 할 때, MMC와 OC를 구별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만 세금혜택에 대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C가 세금 조정에 있어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이탈리아 입법자들은 모든 세금 조정 조항을 엄격한 혜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34)</sup>

가장 중요한 조항은 기업소득세로부터 협동조합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소득의 30%는 기업소득세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농업과 소규모 어업 협동조합과 조합원단체들에 대하여는 20%가 적용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법정비분리기금으로 할당되는 세금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금은 회원들에게 배당되지 않으며 협동조합이 존속하고 해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art. 12, law 16 December 1977, n. 904; art. 1, law 30 December 2004, n. 311). 또한 이 규정은 OC에 적용된다. 그러나 법정비분리기금에 할당된 소득의 30%에 제한된다(art. 12, law 16 December 1977, n. 904, and art. 1, law 30 December 2004, n. 311).

협동조합의 특정 목적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주요 세법 조항은 "협동조합 환급"처럼 조합원들에게 배당되는 이익 일부의 반환이다. 즉, "조합원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과 그들에 의하여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의 추가적 보수"이다(art. 12, law 16 December 1977, n. 904, and art. 1, par. 463, law 30 December 2004, n. 311). 그러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몇 가지 세금 조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어서 더 편리한 경우에는 이들에 의하여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4%로 삭감해 주는 것이다(art. 10, n. 27 -ter, and tab. A, 2ndpart, n. 41-bis, Presidential decree 26 October 1972, n. 633).

34)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op.cit., p. 693.



## V. 결론

우리나라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은 기본법이라는 제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동조합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적 참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입법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데, 우선 제도적으로 법정 적립금이나, 배당 여부에 대한 타당성과 협동조합의 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 및 유기적 관계 설정의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의 제도적 운영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운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예컨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원적 규율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원을 현재와 같이 5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협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상호적 목적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A, B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도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을 구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의 최소 인원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5인 이상을, 이탈리아는 3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 그 목적성 때문에 인원수를 5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 3인 이상으로 인원수의 제한을 낮추는 방향이 좀 더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집단에 대하여 “상호적 목적”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목적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물론 협동조합이라는 본질적 특징이 있으므로 상호적 목적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법문<sup>35)</sup>에 명확히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범위 설정을 하여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 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 김태열·김현경·우미숙·전홍규, 「협동조합 도시 불로냐를 가다」, 그물코, 2010.
- 김두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 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2. 8.
- 정건영,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의 이해”, 「대학생협」 통권 31·32·33호, 1995. 7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9D%B4%ED%83%88%EB%A6%AC%EC%95%84%20%ED%98%91%EB%8F%99%EC%A1%B0%ED%95%A9%EC%9A%B4%EB%8F%99%EC%9D%98%20%EC%9D%B4%ED%95%B4&source=web&cd=2&sqi=2&ved=0CDsQFjAB&url=http%3A%2F%2Fwww.wjhansalim.or.kr%2Ftboard%2Fdownload.php%3Fforum%3Dshare\\_\\_bbs%26num%3D1719%26n%3D0&ei=8THgUPqoCoOfkwXN\\_\\_4CIAQ&usg=AFQjCNGLO4GKKEjWWBJhv--CfyiS5gN5Q&cad=rjt](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9D%B4%ED%83%88%EB%A6%AC%EC%95%84%20%ED%98%91%EB%8F%99%EC%A1%B0%ED%95%A9%EC%9A%B4%EB%8F%99%EC%9D%98%20%EC%9D%B4%ED%95%B4&source=web&cd=2&sqi=2&ved=0CDsQFjAB&url=http%3A%2F%2Fwww.wjhansalim.or.kr%2Ftboard%2Fdownload.php%3Fforum%3Dshare__bbs%26num%3D1719%26n%3D0&ei=8THgUPqoCoOfkwXN__4CIAQ&usg=AFQjCNGLO4GKKEjWWBJhv--CfyiS5gN5Q&cad=rjt)).
- 岡安喜三郎, “イタリアの社會的協同組合の歴史と概要”, 第43次歐州労働者福祉視察 事前研修會, 2011. 7. 20.
- Antonio Fici, *Cooperative sociali e riforma del diritto societario [Social*

35) 예컨대,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항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상호적 목적을 가진 사업조직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 cooperatives and the reform of company law*]: in *Rivista di diritto privato*, 2004.
- Antonio Fici,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comparative and legal profile*, in B. Roelants (ed.),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Governance and normative frameworks*: CECOP, Brussels, 2009.
- Cooperatives Europe/ EKAI Center/ Euric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1435/2003 on the Statute for European Cooperative Society-Part II: National Reports-*, Euricse: Euricse, 2010.
- Guido Bonfante, *Società cooperative [Cooperative societies]*, in *Enciclopedia del diritto, Annali, II, 2*: Giuffrè, Milano, 2008.
- Antonio Fici, "Financial participation by Employees in Co-operatives in Italy", i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vol. 37, n. 2, 2004.
- 관계부처 합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 방향, 위기관리대책회의 12-35-2(의결안건), 2012. 11. 28.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2012. 4.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기획재정부, 2012. 2. 8.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 관계부처합동, 2013. 1. 24.
- <http://www.sviluppoeconomico.gov.it>.
- [http://www.jus.unitn.it/cardozo/Obiter\\_Dictum/codciv/](http://www.jus.unitn.it/cardozo/Obiter_Dictum/codciv/).
- [www.euricse.eu/working-papers](http://www.euricse.eu/working-papers).

[Abstract]

## A Study on the Cooperative in Italy

Park, Kwang-Dong

*Research Fellow i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Adjunct Professor of kangnam Uni., ph.D.in Law*

In the Italian legal system there is a specific regulation for cooperatives. Therefore, the cooperative society can be considered as an autonomous legal type/form of society,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 envisaged by Italian law<sup>101</sup>.

Although Italian legislation on cooperatives can be considered adequate for the promotion of this legal form of enterprise, at the same time it cannot be regarded as simple and straightforward.

First of al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operative legal form of enterprise has constitutional relevance in Italy. Indeed, according to art. 45 of the Italian Constitution, "the Italian Republic recognises the social function of co-operation with mutual character and without private speculation purposes. The law promotes and favours its growth with the most appropriate means, and ensures, with appropriate controls, its character and purposes". The substantial regime of cooperatives is divided into a wide and structured group of general rules and a likewise significant group of particular rules.

①general rules, as such potentially applicable to all cooperatives, are mainly contained in the Civil Code.

②other general rules are included in other laws, among which the following are the most relevant.

③special rules are dedicated to particular types of cooperatives either on

the grounds of the type of the good or service produced, or the type of the relationship.

④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rules and special rules on cooperatives is the following: "cooperatives regulated by a special law are subject to general rules only if compatible". also apply residually and if compatible to cooperatives the rules that govern two different types of companies.

**Key words** : Italy, Cooperative, Cooperative Act, Social Cooperative, a member of a cooperative association

